

의안 번호	1373	【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6. 30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1.(화)

2. 제안이유

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적정한 임명 예방 및 문구 정비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임원을 임명하고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지방공기업법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5.12.15.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 <2015.12.15.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